



# 감사원

## 주의요구(약식)

제 목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

소관기관 군산세관

조치기관 군산세관

내용

군산세관은 2023. 12. 5. 주식회사 [ ](대표자 A)와 “⊕ CCTV 교체공사 계약”(계약금액 7,931,000원, 이하 “CCTV 교체공사 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,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는 2023. 12. 5. CCTV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, 당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<sup>1)</sup> 중 (2023. 12. 1.~12. 31.)이던 주식회사 [ ]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군산세관장은 앞으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

1) 충청북도는 주식회사 [ ]에 대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미제출 등을 사유로 1개월(2023. 12. 1.~2023. 12. 31.)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

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